

WTO/TBT 통보문은 WTO 회원국들이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기술규정, 표준, 검사와 인증제도의 제·개정 사항'을 WTO사무국에 통보한 내용입니다.

WTO/TBT 제도 총괄은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TBT 통보문 접수, 발송 및 조치 운영은 산업 분야별로 3개 정부기관에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WTO/TBT 협정에 의거 '99년 2월 공산품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WTO/TBT 공식 조의처리 지정된 이후, 국내 기술 규정안의 WTO 통보, 외국인 TBT 통보문의 접수 및 보급, 외국으로부터의 TBT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표준원은 세계 무역기구를 통해 회원국들에게 통보되는 각국의 공산품분야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얻기에 확산·보급하기 위하여 통보문 지공강보서비스를 2007년 2월 21일부터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TBT 포털사이트 Know TBT(www.tbtkr) - TBT통보문 자동경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됩니다.

문의 : 기술표준원 기술규제서비스과(02-509-7254~7257/tbt@kats.go.kr)

- 대상기간: 2011.8.29~10.2
- TBT 통보문 건수: 총 23개국 63건
- (부록 · 수정문 제외, 기술규제 · 개정: 26개국 114건)

• 국가별 통계

국가	건수	누계	국가	누계
미국	33	103	미국	166
한국	2	2	유럽연합	93
브라질	9	82	브라질	82
인도네시아	7	21	중국	58
이스라엘	7	61	캐나다	47
유럽연합	5	36	멕시코	49
멕시코	5	40	일본	18
자메이카	5	5	합계	516
일본	4	18		
콜롬비아	3	27		
터국	3	35		
뉴질랜드	2	8		
스위스	2	9		
칠레	2	31		
캐나다	2	27		
대만	2	15		
키르기스스탄	2	8		
아르헨티나	2	22		
베네치아	2	29		
아랍에미리트	2	32		
알바니아	1	5		
요르단	1	1		
페루	1	9		
홍콩	1	8		
터키	1	1		
쿠웨이트	1	13		
합계	114	844		

• 미·중·일 주요 국가 통보건수(2011)

• 대분류별

분류	건수	누계
식약품	25	286
수송물류	17	7
전기전자	16	90
화학세라믹	10	104
생활용품	9	89
에너지	8	43
규제제도	7	20
바이오환경	6	25
건설	5	47
정보디지털	4	20
기계	4	36
농수산물	2	45
소재나노	1	11
합계	114	877

일본: 석면함유제품의 생산, 수입, 운송, 제공, 사용의 추가적 금지(G/TBT/N/JPN/365)

• 2006년 일본은 석면 함유 제품의 생산, 수입, 운송, 제공,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신규시설의 경우 석면 함유 제품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고 있음. 예외적으로 7대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실증테스트를 거쳐야 하였기에 잠정적으로 허용되고 있었음.

• 하지만, 본 통보문(G/TBT/N/JPN/365)을 통해, 그간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던 석면 함유 제품에 대해서도 생산, 수입, 운송, 제공, 사용이 금지됨으로써 석면 함유 제품의 금지 범위가 확대되었음. 통보문에 따르면, 기존에는 잠정 허용되었던 특정 Size 요건을 충족하는 석면가스켓

을 예외 목록에서 삭제하고, 동 제품의 원재료 또는 부품에도 석면 제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음.

- 향후에도 금자 예외 제품에 대한 실증테스트를 거쳐 추가적으로 예외 목록에서 삭제함으로써 석면 함유 제품의 사용을 금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임.

제품명	예외 조건	삭제된 내용
1 Compressed asbestos sheet/gasket(Compressed asbestos fiber gasket)	Size	Those of 1,500mm or larger in diameter which are used for joint parts in the existing domestic facilities of service to chemical industry.
7 Raw maeria	Those used as raw materia or components of products as shown in the above items 1~6.	Those used as raw material or components of products as shown in the above item 1

뉴질랜드: 자연건강제품 법안(G/TBT/N/NZL/57)

- 뉴질랜드의 '자연건강제품법(안)'은 자연건강제품의 안전성 및 표시 문구와 라벨 표시의 진정성을 소비자에게 보장하기 위한 것임. 또한 자연건강제품의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통제 수준을 유지하고 해외규제기관의 평가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저위험의 자연성분 또는 수량만 해당).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본 통보문(G/TBT/N/NZL/57)에 포함되어 있음.
- 동 통보문에서는, 상용화되지 않은 중의학 제품과 활성성분이 낮은 아로마 테라피 등에 쓰이는 제품을 제외하고는, 제품 출시 전에 수입자 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제품 정보를 온라인상에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규제기관은 사용 금지 성분 목록과 사용 적합성분 목록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모든 제조업자는 제조면허와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나, 신뢰할 수 있는 해외규제기관이 발행한 제조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로써 면허발급과 감사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관련 업체들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뉴질랜드 규제기관으로부터 우리 국내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해외규제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임.
- 동 통보 내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는 신뢰할 수 있는 해외규제기관의 결정 기준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둘째는 법률 위반의 정도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형이 차등 처벌되나 그 위반의 구체적인 기준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이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입수하여 대응능력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음.

일본: 식품용 폴리스티렌 플라스틱과 고무용기 및 포장재의 시험방법 수정(G/TBT/N/JPN/366)

- 일본 후생노동성은 최근 폴리스티렌을 이용한 새로운 물질을 시험함에 있어, 기존 시험 방법이 적합하지 않게 됨에 따라 식품에 사용되는 폴리스티렌플라스틱, 고무용기, 포장의 새로운 시험 방법을 발표하고 그 내용을 본 통보문(G/TBT/N/JPN/366)을 통해 알림.
- 동 통보의 주된 내용은 1) 폴리스티렌플라스틱 용기 및 포장에 대한 휘발성 재료 검출 시험 방법과 2) 고무용기 및 포장 재료의 카드뮴, 납 및 고무축진제 검출량에 대한 시험 방법을 개정하는 것에 관한 것임.
- 개정된 시험 방법들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제조 또는 수입 제품에 적용될 것임. 이번 개정으로 관련 용매와 조지방 분석기(Soxhlet system) 등을 수출하는 업체의 수출 감소가 예상됨. 우리 정부로서는 개정된 시험 방법의 대상 제품들(고무겉쪽지, 식품용기 등)이 개정된 시험 방법에 의해서만 실험되어야 하는지, 또는 동일한 결과가 예측되는 경우 다른 방법도 사용이 가능한지 일본 관계 당국에 문의하여 재조·수입업체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임.

일본: 에너지사용합리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및 경제산업성 고시(G/TBT/N/JPN/368)

- 본 통보문(G/TBT/N/JPN/368)은 에너지사용합리화에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정 기구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일본 경제산업성은 에너지사용합리화에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기구의 성능 향상에 관한 기준을 결정·공표하고, 해당 기구의 에너지 효율 기준은 경제산업성 고시에 의해 설정됨). 동 통보에 따라 새로이 특정 기구로 포함되는 기구는, 1) 상업용 냉장고, 냉장냉동고, 냉동고와 2) 다기능 기기(복사, 프린트, 스캔, 팩스 기능 등 2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복합기 프린터) 및 프린터로서, 이들 기구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 효율 기준이 마련될 것임.
- 동 수정안은 2012년 4월 1일부터 발효할 것인데, 향후에도 일본은 상업용 및 주거용 에너지 소비 증가 추세와 지구 온난화 문제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고효율의 에너지 소비 제품을 보급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업계로서는 고효율의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적 노력이 요구됨. 또한 이번 통보로 추가되는 특정 기구에 대해 마련되는 에너지 효율 기준을 사전에 파악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S]